

해양수산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페이지
1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14일	765
2	해양수산과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3일	768
3	해양수산과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3일	771
4	해양수산과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3일	774
5	해양수산과	어선등록말소	즉시	777
6	해양수산과	어선등록, 어선 변경등록	2일/즉시	780
7	해양수산과	수산물가공업신고	7일	783
9	해양수산과	수산물신고필증 재발급신청	즉시	786
10	해양수산과	연안·구획어업 허가	3일	788
11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유예	2일	791
12	해양수산과	어업 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	2일	793
13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2일	796
14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즉시	798
15	해양수산과	시험어업 신청	30일	800
16	해양수산과	허가어업 휴업신고	즉시	805
17	해양수산과	어업폐업신고	즉시	807
18	해양수산과	어업면허 신청	7일	809
19	해양수산과	어업권포기신고	즉시	812
20	해양수산과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3일	815
21	해양수산과	어업권분할인가	3일	818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일수	페이지
22	해양수산과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1일	821
23	해양수산과	어업재개신고	즉시	826
24	해양수산과	변경사항(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 신고	2일	829
25	해양수산과	어업권등 보상청구	10일	832
26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신고	2일	835
27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837
28	해양수산과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10일	839
29	해양수산과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1일	841
30	해양수산과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즉시	844
31	해양수산과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즉시	847
32	해양수산과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5일	849
33	해양수산과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	즉시	852
34	해양수산과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 어업·종묘생산어업)	3일	854
35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14일	857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23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지형도, 연안정보도, 관리자의 동의서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해역이용협의 통과 여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m² (또는 m³)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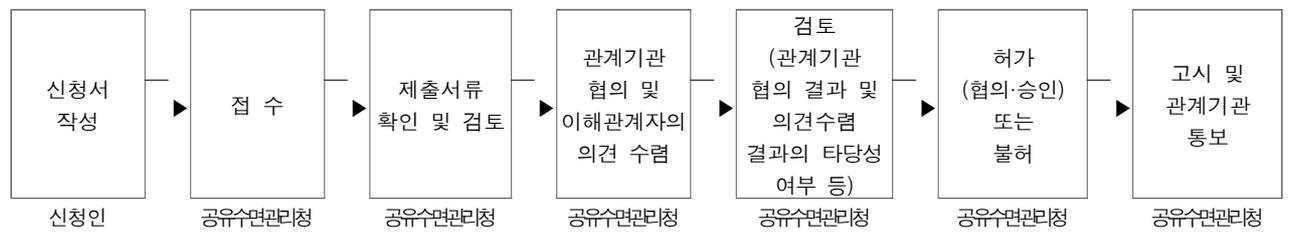
(공유수면관리청) 귀하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p>※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p>	<p>수수료 없음</p>
<p>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사무내용	어선 건조(신규·대체)발주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착공			

어선 []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강 []목 []강화플라스틱(FRP) []그 밖의 재질()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자기부담 만원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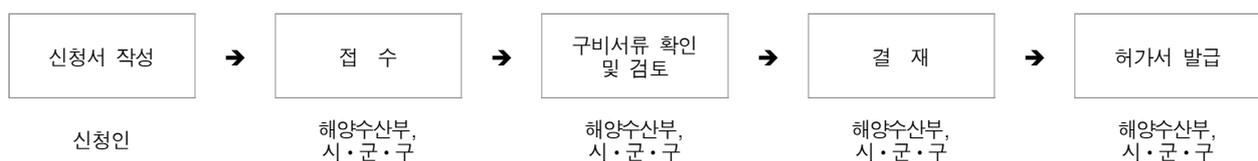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

사무내용	어선 개조 발주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물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물과)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선의 주요치수 및 총톤수 변경 시 신청			

어선 []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구조·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개조장소				조선소명			
개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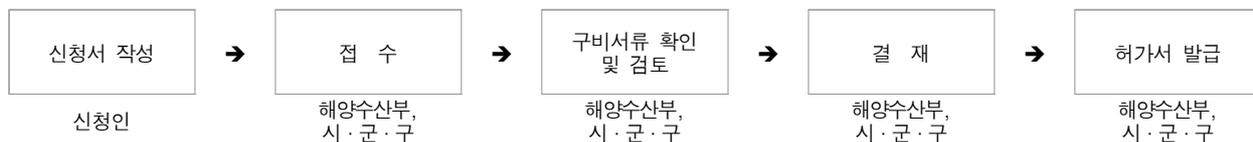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

사무내용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발주 변경 시 2,000원 ▪ 개조발주 변경 시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기존 발주허가 변경 시 신청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4일 시·군·구 : 3일
------	------	------	--------------------------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년	월	일
--------	------	-----	------	---	---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어선소유자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변경사유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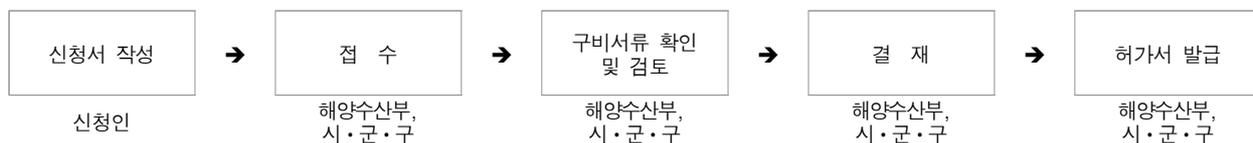
가. 해양수산부장관

-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처리절차



어선등록말소

사무내용	어선 등록 말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어선 해체 사진, 폐기물 처리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 선적증서 및 어선번호판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선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동력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말소 사 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원양수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선 등록, 어선 변경등록

사무내용	어선 등록 및 어선 변경등록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어선등록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13조제1항·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 : 어선검사증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어선사진 ▪ 어선변경등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수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상속 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어선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어업 []변경허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div>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div style="text-align: center;">[]동력 []무동력</div>	추진기관 <div style="text-align: center;">기관 마력 대</div>
	총 톤 수 <div style="text-align: center;">톤</div>	주요치수(m) <div style="text-align: center;">길이: 너비: 깊이:</div>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div>	

어선등록 신청사유	[] 건조 [] 수입 [] 그 밖의 사유()
-----------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매매·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input type="checkbox"/> 매매(소유자 변경) <input type="checkbox"/>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선명, 톤수재측정, 기관의 종류·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p>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p> <p>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p> <p>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p> <p>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p> <p>*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p> <p>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p> <p>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p> <p>나.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p> <p>다. 어업허가증</p> <p>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p>*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p>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유의사항

-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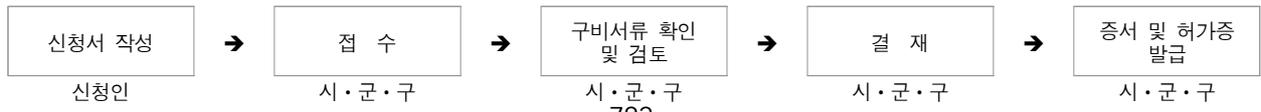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수산물 가공업 신고

사무내용	수산물 가공업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1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유(간유) 가공업 ▪ 냉동·냉장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상수산물가공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피혁가공업 ▪ 해조류가공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해양수산과) → 신고필증 발급(해양수산과)			
수수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제출서류에 따른 심사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용지면적(m ²)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m ²)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제품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박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능력	냉동 t/d	온도(섭씨)
냉장 용적톤		온도(섭씨)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구분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없음
첨부 서류 선상가공업	1.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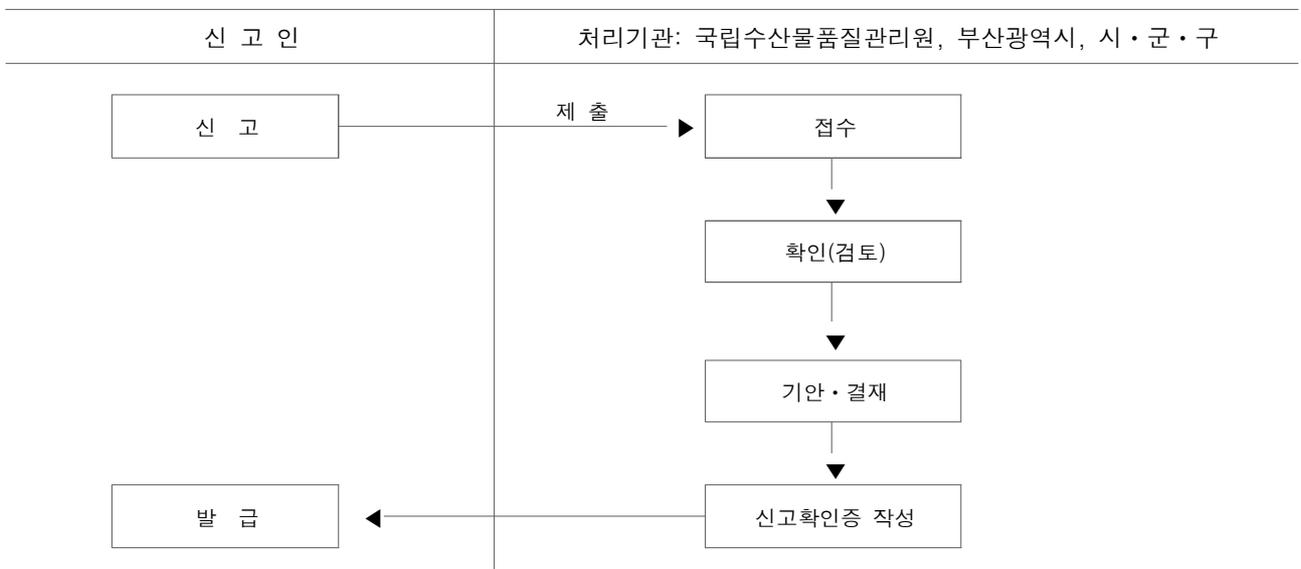
작성 방법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 일일 생산능력 및 저장능력을 적습니다.

업종별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수산동물유 가공업	• 어유	• 간유
냉동·냉장업	• 수산물원형동결()	• 수산물처리동결()
선상가공업 • 수산동물유 가공업 • 냉동·냉장업	• 어유 • 냉동·냉장	• 간유 • 수산물처리동결
그 밖의 가공업	• 수산피혁	
	• 비료	• 호료 • 사료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산물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12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수산식품산업법」 제1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손상일 경우)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해양수산과) → 신고필증 재발급(해양수산과)			
수수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제출서류에 따른 심사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신고확인증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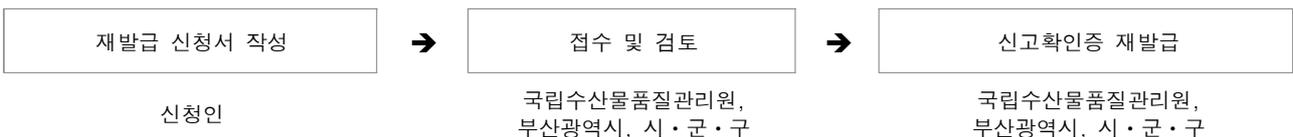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안·구획어업 허가

사무내용	연안·구획어업허가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 2,500원 ▪ 구획어업 4,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허가증 신규 또는 동시어업 허가 갱신 시 신청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시·도: 5일 시·군·구: 3일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공동 신청인 <small>(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small>	성명	생년월일	지분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의 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 어업	구분	어업의 종류	조업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조업기간	포획물· 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p>첨부 서류</p>	<p>1. 근해어업·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p> <p>2.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과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p>	<p>수수료 조례에 따름</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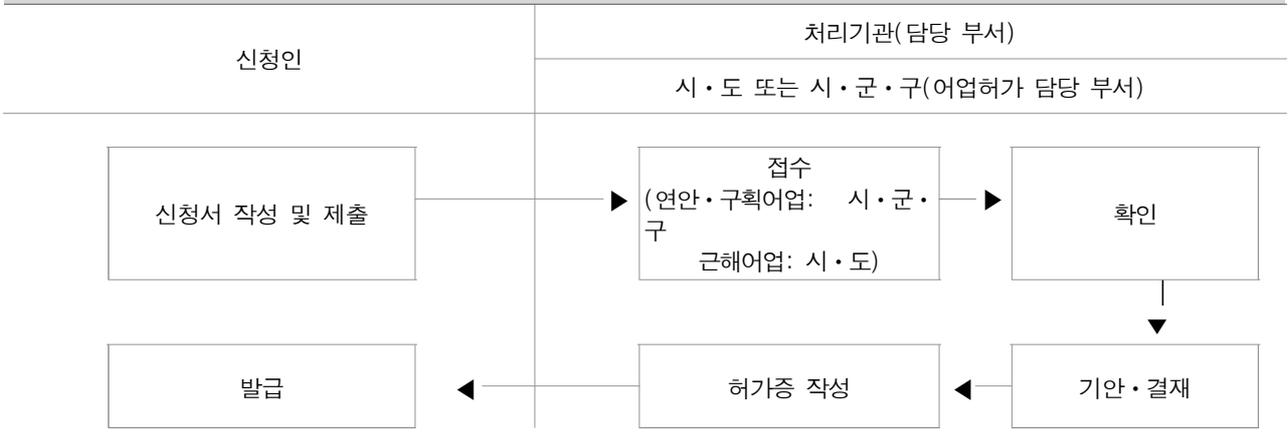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기록한 어업허가증을 다른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업허가 유예

사무내용	어업허가 유예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 신청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어업허가 번호	
	어업허가 기간	
	유예신청 기간	
신청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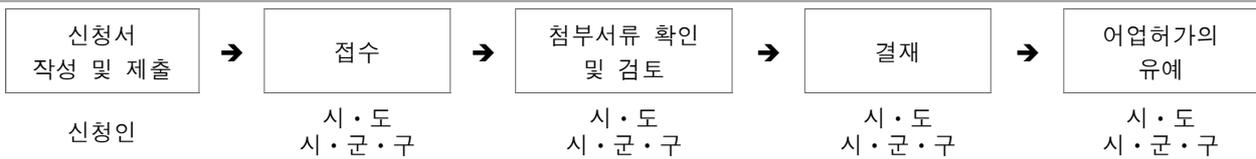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어업허가 변경

사무내용	어업 변경허가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허가 번호	
------------	--

변경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사유	가. 나. 다.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 서류	<p>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다.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합니다)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p>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p>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제1호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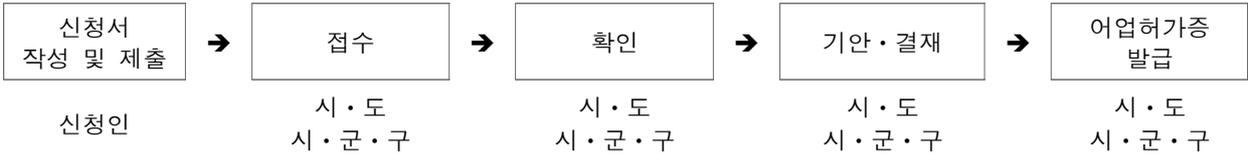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사무내용	어업허가증 재교부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허가증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재발급			

[] 어업허가증
[] 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업허가번호(어업신고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년 월 일	
	분실 사유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어업허가증, [] 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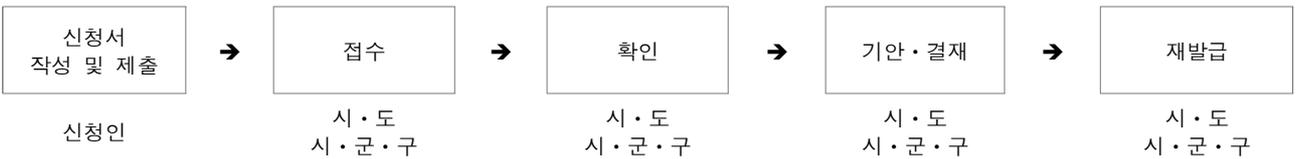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철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어업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8조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허가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변경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허가사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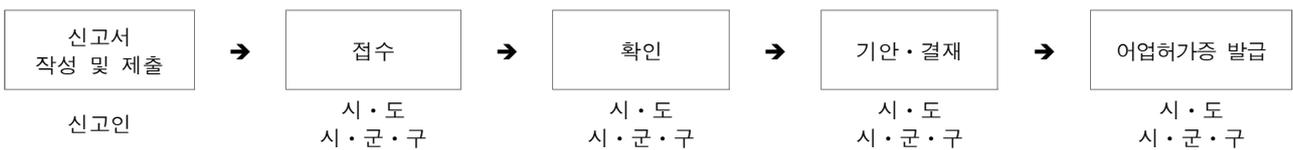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시험어업신청

사무내용	시험어업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경우해당) ▪ 어선사용 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 ▪ 사업계획서, 어구·어로 설명서,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등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수료	▪ 7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새로운 어구·어로방법과 어장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필요			

시험어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험어업의 목적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시험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어선의 명칭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물·채취물의 종류						
시험어업의 시기						
시험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p>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어구·어업이나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6.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7.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p>수수료 1건당 2천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p> <hr/> <p>수수료 조례에 따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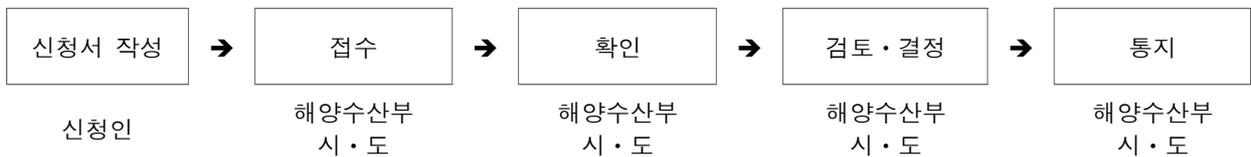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시험양식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험양식업의 목적과 사유								
시험양식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양식의 방법과 시설의 명칭								
사용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선명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일	
양식수산물의 종류								
시험양식업의 시기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 계획서와 수지에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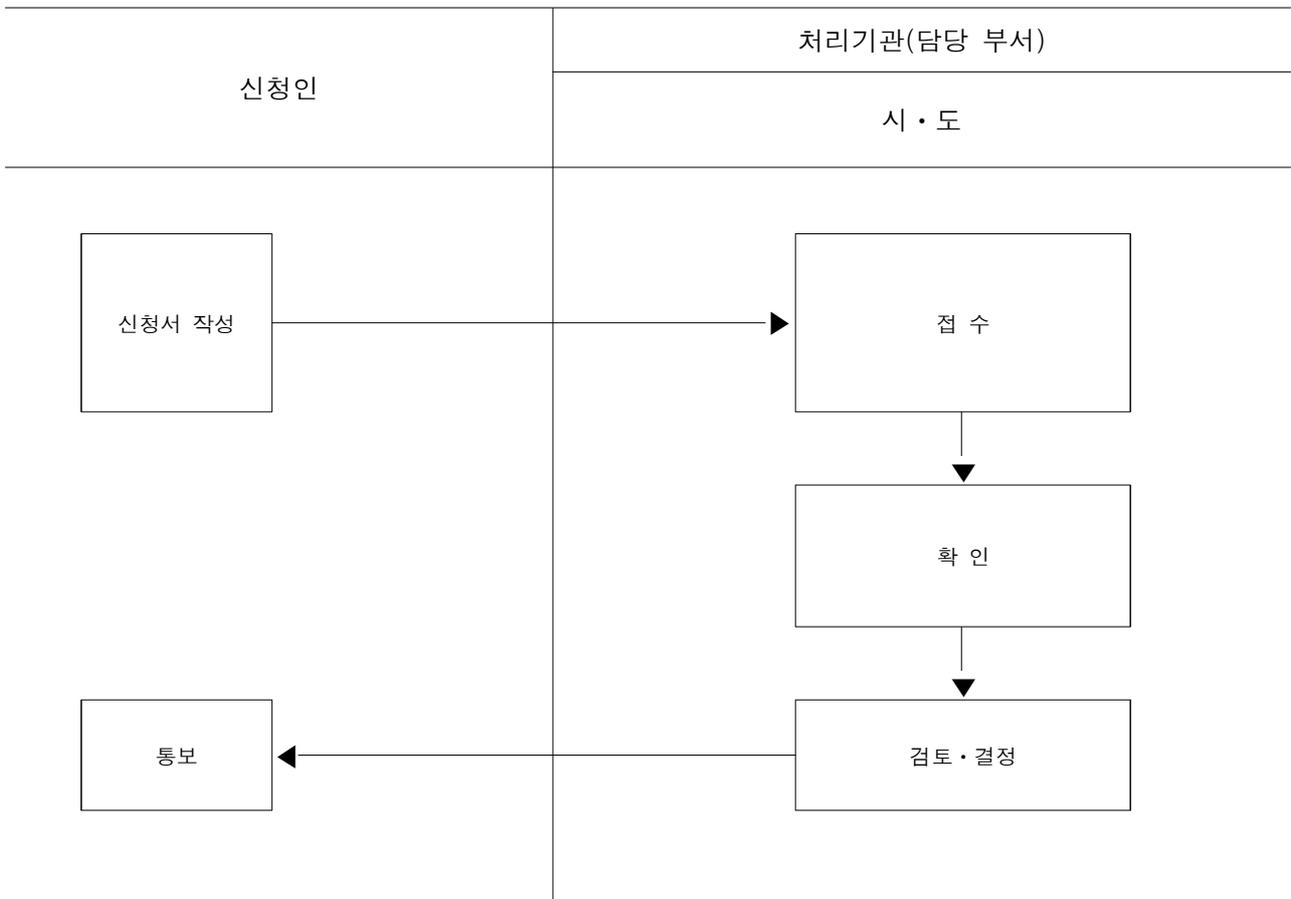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어업 휴업신고

사무내용	어업휴업 신청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수산업법 제29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허가증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어업휴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부터 . . . 까지				
	휴업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 개월)				
휴업사유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의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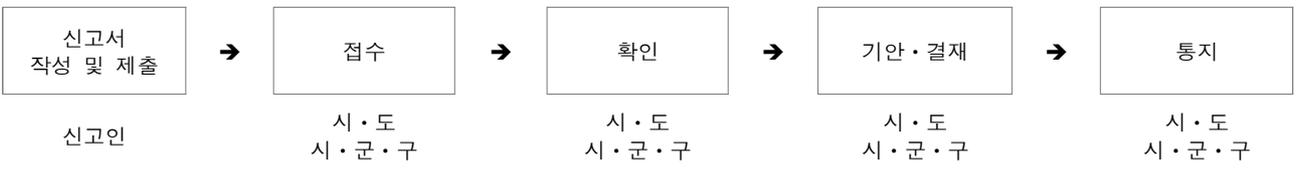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어업폐업신고

사무내용	어업허가 폐업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내용	어업허가번호(어업신고증명서 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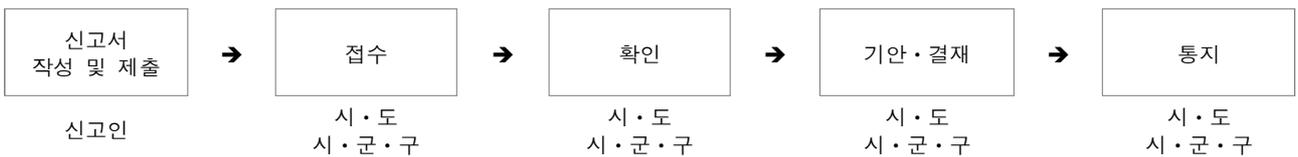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업면허신청

사무내용	어업권 취득을 위한 면허신청			상단
민원처리 부서	해양수산과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허가를 받은 수역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를 갈음)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및 어업면허 우선순위에 따른 처분 ○ 어업권 소유 제한사항 조회(수산관계법령 위반, 법정 소유가능 면적 등)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 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ha
포획물·채취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 면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양식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ha	양식방법 · 양식시설량	
양식수산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 또는 승인받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양식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마늘어업의 양식장·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어업권 포기 신고

사무내용	어업권 포기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제1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증 1부.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어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류	면 허 번 호	어업면허 제 호
포 기 일 자	년 월 일	
포 기 사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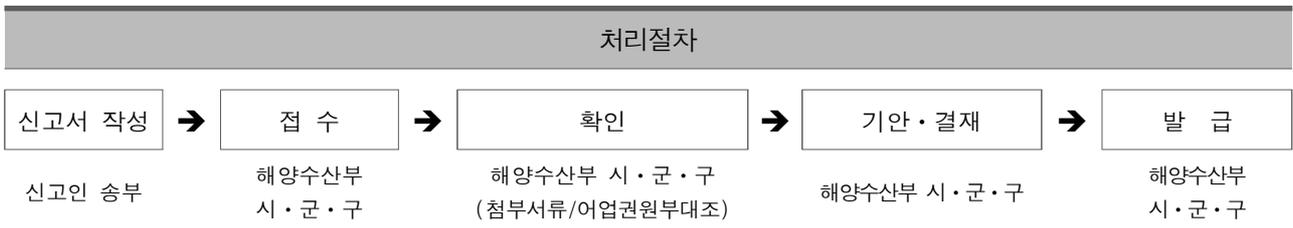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항·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권 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식업의 종류		면허번호	양식업 면허 제 호
포기일자	년 월 일		
포기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제19조에 따라 양식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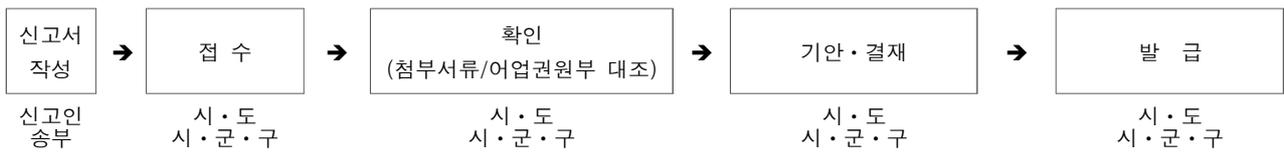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사무내용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즉시매매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1부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어업권(지분)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수료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지분) 이전 입증(매매, 상속, 증여 등) ○ 어업권 소유 제한사항 조회(수산관계법령 위반, 법정 소유가능 면적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5. 15.>

이전인가 신청서

([] 어업권 [] 지 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포획물·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제 호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양식업권** **이전인가 신청서**
 [] **지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양식수산물	
	제 호		
이전 하는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이전 받는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식업권자
양식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어업권 분할인가

사무내용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 수 료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 분할에 따른 양식생산 증가 등 효율성 비교 ○ 수산관계법령 저촉여부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포획물·채취물	
	제 호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ha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성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소		
	성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소		
	성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소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양식수산물
	제 호	
양식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 ha		

양식업권을 분할 받을 자	성 명	생년월일	양식장 면적
	주 소		ha
	성 명	생년월일	양식장 면적
	주 소		ha
	성 명	생년월일	양식장 면적
	주 소		ha

분할 사유	
-------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관 리 선 사 용 지 정 신 청

사무내용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권 소유 또는 행사 조건 확인 (1인 1척 ~ 2척까지만 가능)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8. 28.>

[] 관리선사용의 지정 신청서
[] 어 선 사 용 승 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사 용 인 (행 사 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 동으로 사용 하려는 어업 권자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품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 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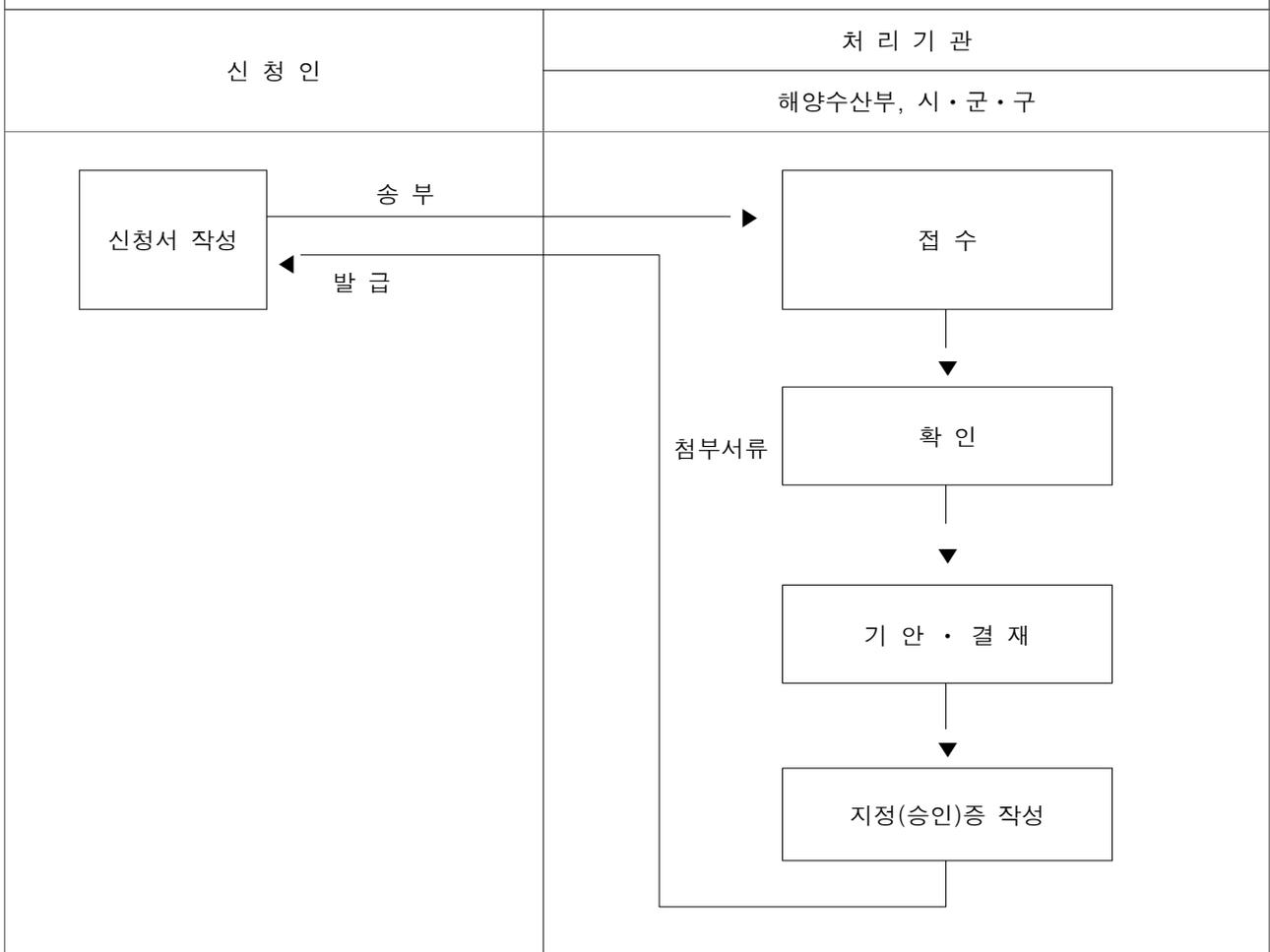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리선 사용의 []지정 ·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사용인 (행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양식업권자	양식업권자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허번호	양식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 (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 연월일	선 적 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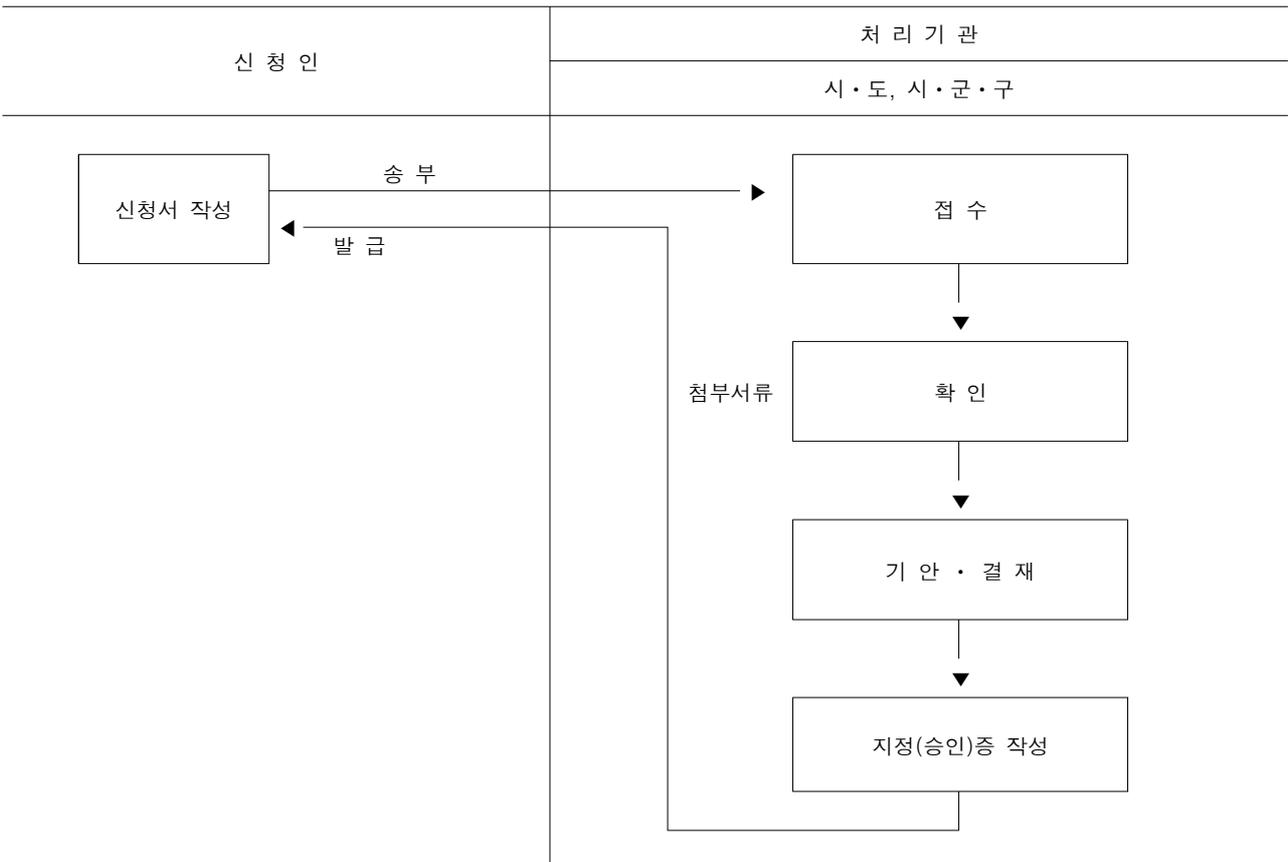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어업(개시) 재 개 신 고

사무내용	어업재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산업 경영계획 등 심사			

어업재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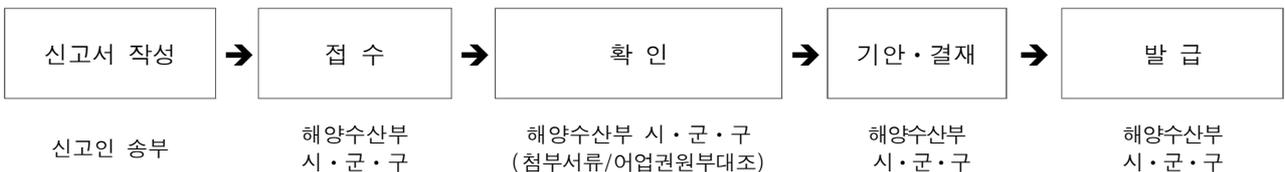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양식업 재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 내용	양식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양식업 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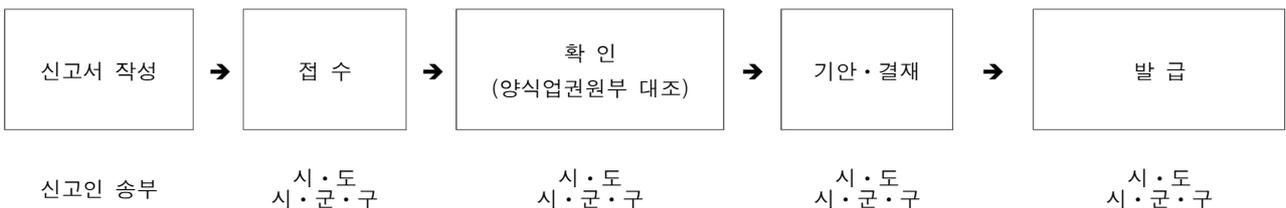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변경사항(주소 · 개명 · 대표자 · 선명 · 설립 목적)신고

사무내용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증 1부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 변경사항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심사·처리(해양수산과)			
수수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산관계법령 저촉여부			

변경사항신고서

([]주소 · []개명 · []대표자 · []선명 · []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 소		
어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리선의 어선명			
변경사유			

「수산업법」 제10조·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면허사항 변경신고서

([]주소 · []개명 · []대표자 · []선박명 · []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식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양식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리선의 선박 명칭			
변경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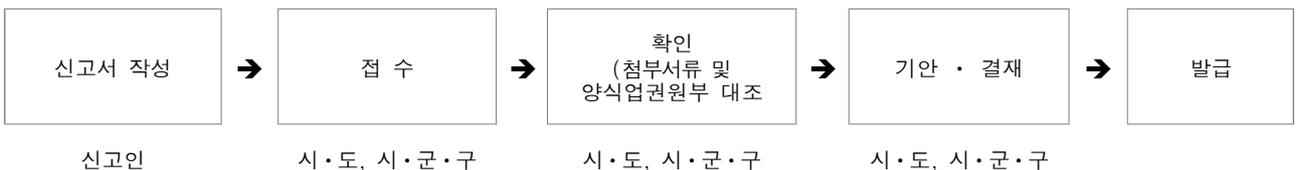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양식업면허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어업권 등 보상 청구

사무내용	어업권 등 보상 청구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확인(해양수산과)			
수수료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 확인 ○ 피해보상에 대한 시설물 등 확인서 ○ 재해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가능여부 판단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청구내용	어업권 또는 공작물 의 표시	④어업의 종류 어업
		⑤면허번호 제 호
		⑥공작물의 종류
		⑦공작물의 규모 m ²
	⑧처분사항	
		⑨처분일자 년 월 일
	손실의 내용	⑩손해액
	⑪명세	
	⑫산출근거	
	⑬손실액과 명세 및 산출방법	
	⑭청구보상금액 일금 원정	

「수산업법」 제81조제1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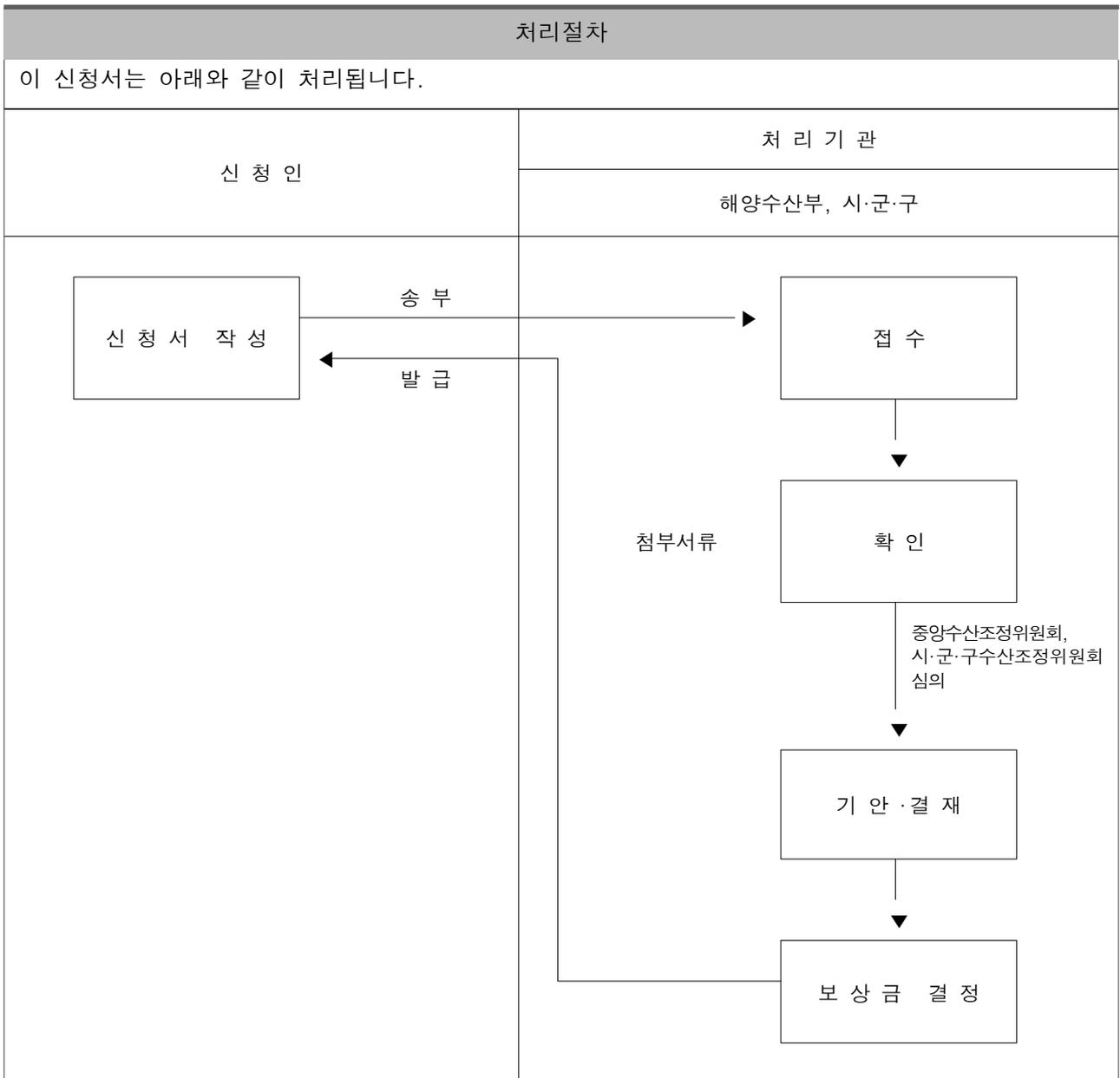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작성 방법

① ~ ③란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낙시어선업 신고

사무내용	신규 낙시어선업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낙시어선업 안정성 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또는 관리선지정증서, 선장의 해기사자격증 및 출입항기록 서류, 전문교육 이수증, 공제보험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시어선업 유효기간은 가입한 공제보험 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낙시어선업 신규 신고로 연안어업 및 관리선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관리선의 경우 2023년까지 유예기간으로 그 후에는 연안어업 어선에 한하여 신청가능 			

낙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낙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낙시어선업에 등록된 어선에 한하여 중요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			

포획·채취 금지 해제허가

사무내용	포획·채취 금지 해제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 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확인(해양수산과)			
수수료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어업 면허내용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해제허가 신청내용	목적 및 사유				
	위치와 면적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와 명칭	총 톤수(톤)	척수	
	어구 및 방법	사용어구	포획·채취 방법		
	포획·채취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량				
	수산자원의 종류			기 타	계
	마릿수				
	중량(kg)				
포획·채취 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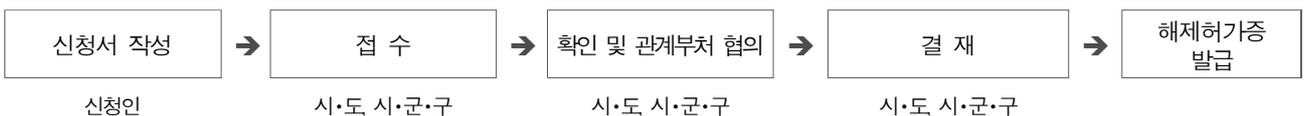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어업면허증 · 관리선지정증 재교부

사무내용	어업면허증 ·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어업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 ○ 양식어업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1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관 리 선 지 정 사 항 변 경 신 청

사무내용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어업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 ○ 양식어업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1부 ▪ 어선검사증서 1부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확인(해양수산과)			
수 수 료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수산관계법령 저촉여부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 경 사 항	
변 경 의 사 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조례에 따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낙시어선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낙시어선업 폐업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낙시어선의 분실 및 도난 6개월 이상 또는 침몰·매도 및 개인사유로 인한 폐업 신청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 번호			
	폐업일			
	폐업 사유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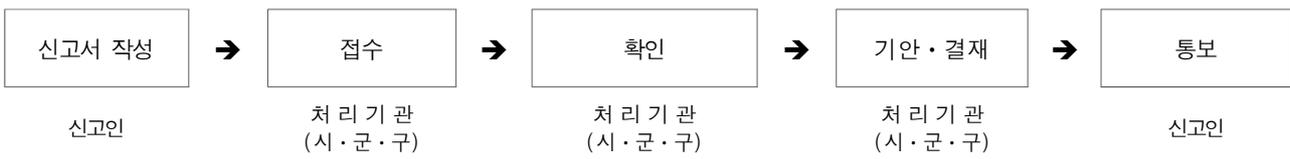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선업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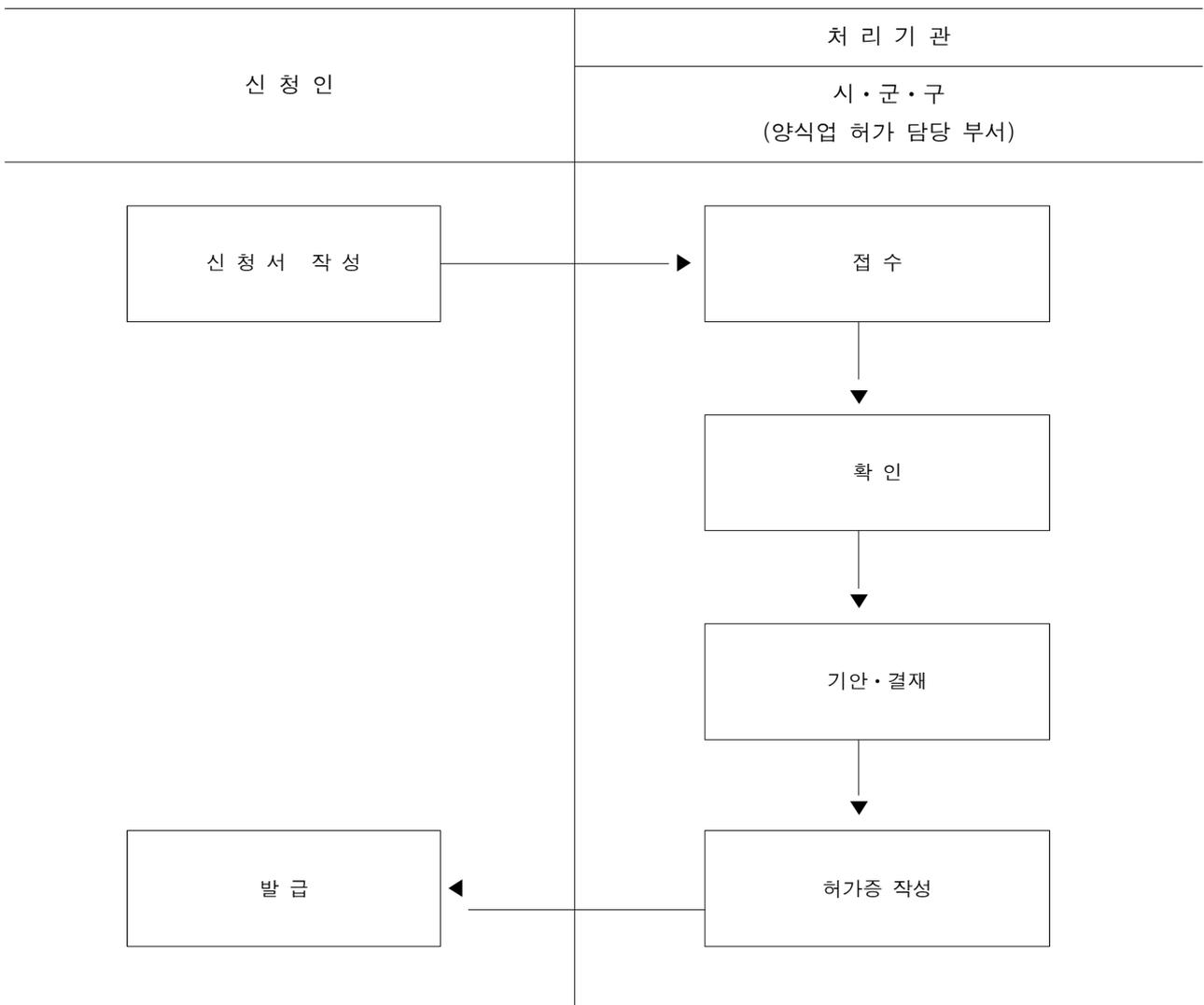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신청

사무내용	육상해수양식어업 신규 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0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서 1부 ▪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시설 및 수조면적 확인, 시설면적에 침전조 포함) 1부.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임차계약서), 소유권이 다른 경우 토지 및 시설 사용 동의서(붙임: 인감증명서) 1부. ▪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심사(해양수산과)			
수수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직접신청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동안만 허가 처분함. 			

처리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

사무내용	어업휴업 중 휴업연장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휴업을 신청한 자가 계속하여 휴업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어업휴업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		
	휴업의 기간		
	허가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의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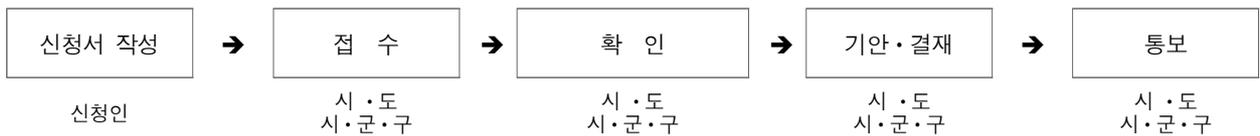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연안·구획·육상)

사무내용	어업허가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994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허가 매도·상속 등의 변경할 사항에 관한 신고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

승계를 하는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어선 또는 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어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또는 어구시설의 수면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그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해양수산과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6023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적도 및 설계도서, 지형도, 연안정보도, 권리자의 동의서 			
업무처리 흐 림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해양수산과)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해역이용협의 통과 여부			

